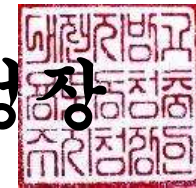


##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4. 5. 1.

###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예정된 처분의 제목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신0철	97.11.14.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처분 통보	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종료처리	정당한 사유없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방문 상담 의무 불이행 1차 출석통지: 24. 2. 28. 2차 출석통지: 24. 3. 5.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	폐문부재	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(이하생략)

4. 공고기간: 2024. 5. 1.~5. 16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노유진(Tel. 043-850-404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